



즐거워라, 행복해라, 흥분해라, 흥분해라, 흥분해라!

검단 기업지원 소식지

<기업지원팀 ☎560-3236>

※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에서는 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관련 정책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
제2019-04호
발행일: 2019.2.7.



[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] 안내

■ 지원대상

-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 - * 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 참여기업의 경우,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 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
-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자
 - *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

■ 지원조건 및 내용

- 지원수준
 - 지원한도: 50명
 - 기업 규모·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
 - * 고용보험 능력개발·고용안정(0.25%), 산재보험(0.75%)
 -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 산정 시,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
 - * '19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,350원,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
 - 고용보험 이종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,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·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

○ 지원한도

-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68,400원
- *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·건강보험료(74,710원)만 지원
- 단,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 보험료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 지원
- *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·산재·건강보험료(89,870원)만 지원
- * 고용보험 이종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·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(152,700원)만 지원

○ 지원기간

-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,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
 - *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
 - * 다만,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
 - *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,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

■ 신청 방법 및 서류

- 신청기간: 매월 15일 까지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(www.seis.or.kr)
- 신청서류: **첨부파일참조**

■ 문의처

-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(☎ 032-440-4973)
-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(☎ 032-560-2969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[2019년 외국어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 참가업체 모집 공고] 안내

■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19 외국어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 지원
- 사업기간: 업체선정 후 ~ 2019.12.31.
- 지원업체: 25개사 내외
- 지원대상: 전년도 수출실적 1,000만불이하 관내 중소 제조업체 30개사
 - * 관내업체: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인천 소재
- 지원내용
 -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(종이/전자, 최소 4p)
 - * 기획, 도안, 촬영, 인쇄, 제본 등 (제품매뉴얼 제외)
 - 홍보 동영상 제작비 일부(자막/소리 외국어 제작)
 - * 기획, 촬영, 편집, 후보정, 오디오 등 (음향저작권, 시나리오 작가비 제외)

○ 지원규모: **첨부파일참조**

■ 신청 방법 및 서류

- 신청기간: 2019.1.23. ~ 2.15.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
 - 인천시 Biz오케이 (bizok.incheon.go.kr)
- 신청서류: **첨부파일참조**

■ 문의처

- (재)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 배정희주임 (☎032-560-0635)
-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김종현 주무관 (☎032-440-4259)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